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3월 1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 10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3. 10.(목)	담당부서	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담당과장	박용민 과장(043-870-5450)	담 당 자	경도현 연구사(043-870-5452)

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

- 국표원, 「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」 개정 -

□ 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**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**에 대한 **안전관리**가 **강화**된다.

○ **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상훈)**은 **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**으로 **확대·지정***하고, **안전 표시사항**을 **강화**하도록 **「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」**을 **개정**한다고 **11일** 밝혔다.

* 파장 400-700nm 레이저를 방출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이 대상이며, 산업용, 사업자용, 공연용, 군용 제품은 제외됨

□ 이에 따라, 이미 KC 인증(안전확인)을 받고 있는 **레이저 포인터**(자료발표 등에서 활용)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, 레저용품,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**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**으로 **KC 인증**(안전확인) **대상이 확대**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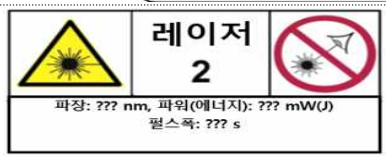
○ 이러한 제품의 **레이저 출력 세기**는 국제표준(IEC 60825-1)*에 따라 **1 mW 이하로 제한**된다.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, **1 mW를 초과**하는 **레이저 빛**을 **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** 경우 **상해를 유발**할 수 있다.

* < 국제표준(IEC 60825-1: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)의 레이저 등급별 위해정도 >
① 1 mW 이하(2 급 이하): 단기간 노출시 상해 위험 없음
② 1 mW 초과(2 급 초과): 레이저 출력의 세기, 노출시간 등에 비례하여 눈·피부 상해 위험 증가

○ 또한,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, **사용상 주의사항*** **및 경고라벨**(도안 및 문구)**을 국제표준(IEC 60825-1)에 따라 **제품**(또는 최소단위 포장), **사용설명서에 표기**하도록 하는 등 **안전 표시사항을 강화**한다.

* 사용상 주의사항: 사용자 안전수칙, 레이저 빔의 출구 위치, 레이저 출력등급 등

** 경고라벨 예시 (도안 및 경고문구)

	1급 레이저용품	2급 레이저용품
기본 라벨		
대체 라벨		

□ 이번에 개정하는 「**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**」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**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**된다.

○ **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**는 **2022년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·통관 전에** 반드시 **지정된 시험·검사기관***에서 **제품시험**을 거치고 **안전확인 신고**를 한 후, **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(KC)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**해야 한다.

*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

○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(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6)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(www.kats.go.kr)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□ **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**은 "**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** 동시에, 우리 **제품의 안전성과 품질**을 미국·유럽·일본 등 **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**시키기 위해 **안전기준을 개정**하였다"면서,

○ "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**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(KC)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**"고 당부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경도현 연구사(043-870-54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 적용대상 제품 사례**

□ 기존 적용 대상 제품 사례 (A종)

레이저포인터	별지시기	성인용 장난감
		

□ 개정고시에 따라 적용범위에 추가된 제품 사례 (B종)

구 분	제품 사례
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	   
휴대용 레이저 레저용품	▪ 자전거 레이저 후미등 등    ▪ 당구, 골프용 레이저 용품 등   ▪ 레이저 조준기(스포츠 레저용품) 등  
휴대용 레이저 사무용품	▪ 레이저 가위 등 
휴대용 레이저 장난감 또는 **오락용품** (성인용)	▪ 레이저 고양이 장난감 등  